번호			건축물 등 해체작업 시 붕괴 예방을 위한 사전조사·작업계획서 내용과
2			안전관리 방안
			제138회 제3교시 2번 · 학습용 답안 예시
			1. 개요
			· 해체작업은 부재 제거로 구조계가 계속 바뀌어 예상하지 못한 붕괴·낙하
			위험이 큼
			· 산안법은 구축물등 해체 시 사업주에게 사전조사·작업계획서 의무 부과(기
			준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)
			·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상 허가·신고와 해체계획서, 허가 대상은 해체공사
			감리 절차가 추가됨
			2. 해체작업 붕괴 위험요인
			· 도면과 실제 구조 불일치로 인한 구조 판단 오류
			· 해체 순서 위반·과도한 부재 절단(취약화)에 따른 잔존 구조 불안정
			· 장비·잔재물 하중의 상층 슬래브 집중
			· 인접 굴착·노후화·화재로 인한 내력 저하
			3. 사전조사 내용(별표 4)
			· 해체건물 등의 구조: 구조형식, 주요구조부, 노후·손상 상태, 도면과 현장
			실측 대조
			· 주변 상황: 인접 건축물·도로·보행자 동선, 지하매설물, 가공전선
			· 조사결과 기록·보존 후 작업계획에 반영(제38조 제1항)

번호			4. 작업계획서 내용(별표 4)
2			·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
			· 가설설비·방호설비·환기설비 및 살수·방화설비 등의 방법
			· 사업장 내 연락방법
			· 해체물의 처분계획
			· 해체작업용 기계·기구 등의 작업계획서
			·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
			· 그 밖에 안전·보건에 관련된 사항
			· 작성 내용 근로자 주지(제38조 제2항), 작업지휘자 지정(제39조 제1항)
			5. 건축물 해체계획서(건축물관리법)
			· 허가: 원칙. 신고: 연면적 500㎡ 미만·높이 12m 미만·3개 층 이하 모두
			충족 등(법 제30조 제1항)
			· 조례 시설 인접 시 신고 대상도 허가(법 제30조 제2항)
			· 포함 내용: 공사 개요, 건축설비 이동·철거·보호, 작업순서·해체공법·구조안
			전계획, 안전관리대책, 해체물 처리, 부지정리·인근 보수·보상(시행규칙 제
			12조)
			6. 붕괴 예방 안전관리 방안
			· 착수 전: 구조안전계획 검토, 작업계획서 교육, 작업지휘자 배치
			· 작업 중: 계획 순서 준수, 무너뜨리기 전 작업 반경 내 인원 확인·출입금지(
			제384조 제1항)

번호			· 건축물 해체계획서대로 해체 불가·붕괴 우려 시 구조보강계획 작성(제384
2			조 제2항)
			· 주요구조부의 설계·시공 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·안전진단(제52조 제6호)
			· 허가 대상 건축물: 해체공사감리자의 확인, 시정·중지 요청, 필수확인점 사
			진·동영상, 일일 등록(법 제31·32조)
			※ 공식 정답·채점기준이 아닌 학습용 예시임